3 부채 / 채무 / 채권

3－1 통합부채현황

- 통합부채는 **지방자치단체**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**지방공기업**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**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**입니다. 2024년도 결산 기준 우리 장성군의 통합부채는 정부 산정 결과 확정 후 **2026년 12월 중 수시 공시**할 예정입니다.

3－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-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**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**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**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**으로, '3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3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장성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4년	2025년	증 감	비고
자산(A)	29,238	30,039	801	
부채(B)	125	123	△2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0.43	0.41	△0.02	

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▸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▸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우리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0.4%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,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2억 감소하였습니다.

3－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■ 해당없음

3－4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■ 우리 장성군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	2024년				2025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
출연기관	소 계	128	4	123	3.47%	129	6	123	4.56%
	장성장학회	114	0	114	0.00%	114	0	114	0.00%
	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	13	4	9	46.70%	15	6	9	59.45%

우리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가 있는 기관은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며, 부채 총계는 6억원입니다.

3－5 우발부채 현황

해당없음

3－6 지자체 채무 현황

지방(자치단체)채무란 **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**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장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24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5년도 현재액 E=(A+B)
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**0**	**0**	**0**	**0**	**(원금기준)**
일 반 회 계	0	0	0	0	0
특 별 회 계	0	0	0	0	0
기 금 회 계	0	0	0	0	0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억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21	2022	2023	2024	2025
채무현황	0	0	0	0	0
인구수	43,365	43,146	42,543	42,026	42,958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0	0	0	0	0

3-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행안부장관→지자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(지자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.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21	2022	2023	2024	2025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66	280	280	385	312
발행액(B)	0	0	0	0	0
발행비율(B/A*100)	0	0	0	0	0

▸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(0.0, 행안부장관→자치단체)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*한 기본한도액(0.00, 자치단체→행안부장관)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,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

* 지방재정법 개정('20.4.)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

▸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의무매출채권(지역개발,도시철도) + 차환채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

** 차환채 =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'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

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2억원(별도한도액 포함)이며, 발행액은 0원입니다.

3－8 일시차입금 현황

■ 해당없음

3－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■ 해당없음

3－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

■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「지방재정법」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5~'2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**2026년 12월에 별도 수시 공시**할 예정입니다.

3－11 보증채무 현황

■ 보증채무란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**로서 우리 장성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※ '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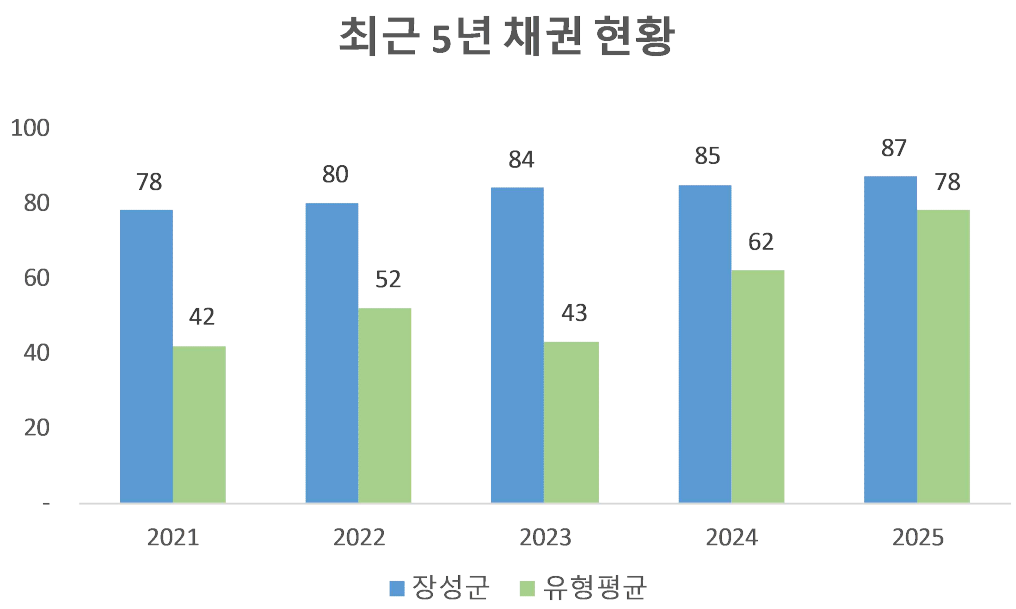
3 – 12 채권 현황

채권이란 **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**입니다. 우리 장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24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25년도 현재액 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
합 계		85	2	2	0	87
일 반 회 계		75	0	0	0	75
특별회계	소계	10	2	2	0	10
	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	10	2	2	0	10

▸ '2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